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13. 11 . . (제 회)	

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안전행정과
제출 연월일	2013. 11. .

법무통계담당 심사필

#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13. 11. .

제 출 자 : 고령군수

## 1. 개정이유

-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등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으로 「지방공무원법」이 개정(법률 제 11531호, '12.12.11개정, '13.12.12시행)됨에 따라 종전 기능직 및 계약직, 별정직의 직종변경과 관련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과 용어 정비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조문 정비하기 위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직종개편 내용

- 기능직 → 일반직 재편
  - 기술직군 직렬신설(3개) : 운전직, 위생직, 시설관리직
  - 행정직군 직렬신설(1개) : 방호직
  - 관리운영직군 직렬신설(6개)
    - 통신운영·전기운영·기계운영·열관리운영·화공운영·사무운영
- 별정직
  - 별정직 : 별정6급상당(비서)
  - 전문경력관 : 나군(6·7급상당), 다군(8·9급상당) → 일반직
- 계약직
  - 명칭변경 : 임기제(일반임기제, 시간제임기제, 한시임기제)

### 나. 정원채정기준 조정

#### ○ 종류별 기준(안 별표 1)

구 분	일 반 직	기능직·고용직	별정직·정무직
현 행	87% 이상	12% 이내	1% 이내
조 정	+99.5%	△12%	△0.5%
개 정	99.5% 이상	폐지	0.5% 이내

※ 일반직의 경우 연구직·지도직,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.  
읍면동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○ 직급별 기준(안 별표 2)

- 일반직(연구·지도직 제외)

구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경력관
현행	1% 이내	6%이내	28% 이내	31% 이내	25% 이내	9% 이상	0%
조정		△1%	△3.2%	△1.6%	△0.6%	+5.9%	+0.5%
개정	1% 이내	5% 이내	24.8% 이내	29.4%이내	24.4%이내	14.9%이상	0.5%이내

- 기능직 : 폐지

구분	6급	7급	8급	9급
현행	4 % 이내	17% 이내	19% 이내	60.7% 이상
조정	△4%	△17%	△19%	△60%
개정	폐지	폐지	폐지	폐지

- 연구·지도직

구 분	연 구 직		지 도 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현 행	34% 이내	66% 이상	14% 이내	87% 이상
조 정	△17%	+17%	-	-
개 정	17% 이내	83% 이상	-	-

- 별정직 : 폐지

구 분	6급상당	7급상당	8·9급상당
현 행	90% 이내	10% 이내	-
조 정	△90%	△10%	-
개 정	폐지	폐지	-

- 전문경력관 : 신설

구 분	가군	나군	다군
비 율	-	100 % 이내	-

#### 다. 직급별 정원표(안 별표 3)

- 일반직 : 417명 → 473명(+56)
  - 본 청 : +21명  
(6급 +2명, 7급 +5명, 8급 +6명, 9급 +7명, 전문경력관 “나”급 +1명)
  - 의 회 : +3명(7급 +2명, 9급 +1명)
  - 직속기관 : +9명  
(8급 +2명, 9급 +6명, 전문경력관 “나”급 +1명)
  - 사 업 소 : +14명(7급 +2명, 8급 +3명, 9급 +9명)
  - 읍 : +2명(9급 +2명)
  - 면 : +7명(7급 +1명, 9급 +6명)
- 기능직 : 폐지, 54명 → 0명(△54)
  - 본 청 : △20명
  - 의 회 : △3명
  - 직속기관 : △8명
  - 사 업 소 : △14명
  - 읍 : △2명
  - 면 : △7명
- 별정직 : 폐지 → 0명(△2)
  - 본 청 : △1명(△1)
  - 직속기관 : △1명(△1)
- 연구직 : 6명(변동없음)
- 지도직 : 22명(변동없음)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공무원법」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 : 기획조정실

#### 라. 기타사항

- (1)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1 참조
- (2) 입법예고 : 생략(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)
- (3) 성별영향평가 :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외대상
- (4) 비용추계서 : 붙임2 참조

### 4. 자치법규 내용

##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”을 “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)”로 하고

제5조 중 “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”을 “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)”로 한다.

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고령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공무원(별정직, 기능직, 임시직,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)”를 “공무원(전문경력관, 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② 고령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”를 “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”로 한다.

별표 2 제목 중 “전임계약직공무원”을 “일반임기제공무원”으로 한다.

③ 고령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제4항 중 “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제계약직 공무원”을 “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에 따라 10명 이내의 시간임기제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78조제1항 중 “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”을 “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간제계약직공무원”을 “시간임기제공무원”으로 한다.

[별표 1]

고령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(제3조제1항 관련)

구 분	일 반 직	별정직·정무직
비 율	99.5% 이상	0.5% 이내

비고

1.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·지도직,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.
2. 읍·면·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2]

고령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분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경력관
비율	1%이내	5%이내	24.8%이내	29.4%이내	24.4%이내	14.9%이상	0.5%이내

2. 연구·지도직공무원

구 분	연 구 직		지 도 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 율	17%이내	83%이상	14%이내	86%이상

[별표 3]

고령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 회	직속 기관	사업소	읍	면
총 계	502	232	10	116	32	19	93
정무직 계	1	1					
군 수	1	1					
일반직 계	<u>473</u>	<u>229</u>	<u>10</u>	<u>93</u>	<u>29</u>	<u>19</u>	<u>93</u>
4급	1	1					
4~5급	3	1		1		1	
5급	22	10	2	2	1		7
6급 이하 계	<u>445</u>	<u>216</u>	<u>8</u>	<u>89</u>	<u>28</u>	<u>18</u>	<u>86</u>
전문경력관	<u>2</u>	<u>1</u>		<u>1</u>			
연구직 계	6	2		1	3		
연구관	1				1		
연구사	5	2		1	2		
지도직 계	22			22			
지도관	3			3			
지도사	19			19			



## 5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) 본청, 의회사무과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면 등 <u>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</u>은 별표 3과 같다.</p>	<p>제4조(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) ----- <u>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)</u> -----.</p>
<p>제5조(정원관리기관별·직렬별 정원) 본청, 의회사무과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·면 등 <u>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</u>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5조(정원관리기관별·직렬별 정원) ----- <u>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)</u>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
## (별표 - 신구조문 대비표)

현 행				개 정		
<b>【별표 1】</b> 고령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				<b>【별표 1】</b> 고령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		
구분	일 반 직	<u>기능직·고용직</u>	별정직·정무직	구 분	일 반 직	별정직·정무직
비율	<u>87% 이상</u>	<u>12% 이내</u>	<u>1% 이내</u>	비 율	<u>99.5% 이상</u>	<u>0.5% 이내</u>

현 행							개 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【별표 2】</b> 고령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							<b>【별표 2】</b> 고령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일반직공무원							1. 일반직공무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4급이 상	5급	6급	7급	8급	9급	구분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전 문 경력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<u>1% 이내</u>	<u>6% 이내</u>	<u>28% 이내</u>	<u>31% 이내</u>	<u>25% 이내</u>	<u>9% 이상</u>	비율	<u>1% 이내</u>	<u>5% 이내</u>	<u>24.8% 이내</u>	<u>29.4% 이내</u>	<u>24.4% 이내</u>	<u>14.9% 이상</u>	<u>0.5% 이내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기능직공무원							2. 연구·지도직공무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6급	7급	8급	9급	연구 직			지 도 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<u>4% 이내</u>	<u>17% 이내</u>	<u>19% 이내</u>	<u>60% 이상</u>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. 연구·지도직공무원							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분</td> <td colspan="2">연구 직</td> <td colspan="2">지 도 직</td> <td colspan="4"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연구관</td> <td>연구사</td> <td>지도관</td> <td>지도사</td> <td colspan="4"></td> </tr> <tr> <td>비율</td> <td><u>34% 이내</u></td> <td><u>66% 이상</u></td> <td>14% 이내</td> <td>87% 이상</td> <td colspan="4"></td> </tr> </table>								구분	연구 직		지 도 직						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					비율	<u>34% 이내</u>	<u>66% 이상</u>	14% 이내	87% 이상				
구분	연구 직		지 도 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<u>34% 이내</u>	<u>66% 이상</u>	14% 이내	87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. 별정직공무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6급상당	7급상당	8·9급상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<u>90% 이내</u>	<u>10% 이상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 현 행

**【별표 3】**

**고령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**

구 분	총 계	본 청	의 회	직속기관	사업소	읍	면
총 계	502	232	10	116	32	19	93
정무직 계	1	1					
군 수	1	1					
일반직 계	417	208	7	84	15	17	86
4 급	1	1					
4 ~ 5급	3	1		1		1	
5 급	22	10	2	2	1		
6급 이하 계	391	196	5	81	14	16	79
별정직 계	2	1		1			
6급상당이하 계	2	1		1			
연구직 계	6	2		1	3		
연구관	1				1		
연구사	5	2		1	2		
지도직 계	22			22			
지도관	3			3			
지도사	19			19			
기능직 계	54	20	3	8	14	2	7

## 개 정

**【별표 3】**

**고령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**

구 분	총 계	본 청	의 회	직속기관	사업소	읍	면
총 계	502	232	10	116	32	19	93
정무직 계	1	1					
군 수	1	1					
일반직 계	473	229	10	93	29	19	93
4 급	1	1					
4 ~ 5급	3	1		1		1	
5 급	22	10	2	2	1		7
6급 이하 계	445	216	8	89	28	18	86
전문경력관 계	2	1		1			
나균	2	1		1			
연구직 계	6	2		1	3		
연구관	1				1		
연구사	5	2		1	2		
지도직 계	22			22			
지도관	3			3			
지도사	19			19			

## 6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가. 재정수반요인

- 1) 직종개편에 따른 비용(인건비 등)

### 나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고령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

### 다. 미첨부 사유

직종개편에 따른 같은 직급으로 변경 전환에 따른 비용부분은 상계 처리됨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은 해당사항 없음

### 라. 작성자

안전행정과 지방행정주사 신상진